

관 계 법 령

教 育 法

(法律 第3054號 '77.12.31)

第6節의 2 專門大學

제128조의2 (目的) 專門大學은 社會 各 分野에 관한 專門의인 知識과 理論을 教授研究하고 才能을 研磨하여 國家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中堅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28조의3 (修業年限) 專門大學의 修業年限은 2年내지 3年으로 한다.

제128조의4 (大學編入學)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同系大學의 해당 學科에 한하여 編入學할 수 있다.

제128조의5 (研究施設등) 專門大學에는 研究 및 實習을 위한 施設을 附設할 수 있다.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

(대통령령 제9078호 '78.7.4)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문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원·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 ① 전문대학에는 학과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5인 이상 두되, 학과당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40인마다 교원 1인씩을 더한다.

② 수업년한이 2년을 초과하는 학과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6월마다 제 1항의 정원에 교원 1인씩을 더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정원에외에 학과당 1인 이상의 조교를 두되 학과당 학생정원이 6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 이상의 조교를 두어야한다.

④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제 1항및 제 2항의 정원에외에 필요한 수의 교직원을 둘 수있다.

⑤ 1학과에 2이상의 전공을 들때, 또는 2부제를 실시할 때에는 이를 각각 학과로 보고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교수기준시간) 제 2조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사무직원) 전문대학의 사무직원은 학생정원이 200인 이하인 때에는 5인을 두고 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한다

제5조 (교지) ①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체광·소방등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하며 그 기준 면적은 건물 총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에서 교지라 함은 체육장·농장·연습필·어장등을 제외한 교사용대지를 말한다.

제6조 (교사) ① 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기준면적은 학생정원 80인까지는 학생 1인에 대하여 1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80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인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씩을 더한다.

② 제 1항의 교사에는 교실·학강실·교수실·사무실·교수연구실·도서관회의실·강당·시청각실 등과 의무실·식당·학생휴게실이 있어야 한다.

③ 제 2항의 각 시설은교육 및 보건위생상 필요한 규모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체육장) ①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이어

야 하며, 그 기준면적은 학생정원 1,000인까지는 9,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1,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인에 대하여 3.3평방미터 이상씩을 더한다.

②체육계 학과를 들 때에는 제 1항의 기준면적에 불구하고 1만5천평방미터 이상의 체육장이 있어야 한다.

③ 동일학교의 교사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의 체육장의 면적은 공동 사용하는 학생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통산하고 공동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산된 교사마다 제 1항의 기준에 따른 체육장이 있어야 한다.

④ 체육장은 육외 시설로 학교구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구외에 둘 수 있다.

제 8 조 (실험·실습·실기에 관한 시설설비)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 하는 학과의 실습 또는 실기에 관한 시설설비기준은 문교부령으로 한다.

제 9 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학생정원 1할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 실외에 정기간행물실·서고·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②도서는 학과당 5백권 이상으로 하되, 학생정원이 800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인마다 5권씩을 더 한다.

③ 도서관에는 제 2항의 도서외에 학과마다 학술잡지 2종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야간수업학교 등의 시설설비) ①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또는 계절제 수업을 겸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시설설비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야간수업 또는 계절제 수업단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 4 조 내지 제 9 조에 규정된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설립인가시의 기준) ① 전문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하는 이영의 기준에 따라 교지·체육장·농장·연습림(농장·연습림은 농업계에 한한다)·어장(수산계에 한한다) 등의 지적 시설전부와 건물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고, 그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 전부를 완비할 수 있는 자원 또는 경비(국·공립에 있어서는 예산)와 조년도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 문교부장관은 전문대 학으로서 교원, 시설·설비 등이 이영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법 제 90 조 규정에 의하여 학생모집의 정지학과의 폐지, 학생정원의 감축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평가위원회 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대학의 교원, 시설·설비와 교육계획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전문대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4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영에 규정된 각 기준의 적합 여부
2. 학교별교육 계획의 타당성 여부

- 3. 학교별 시설·설비의 적합여부
- 4. 전문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산업교육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대학및 전문대학 교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실무위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사항을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직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 한다.

제2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초급대학 실업고등 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 개정법을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5년이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경과조치) 문교부장관은 부칙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생정원의 감축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 집

전문대학 실험·실습·실가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문교부령 제 425호 78. 8.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전문대학 설치기준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실험·실습·실가에 관한 시설·설비 (이하 「시설·설비」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학과)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전문대학의 각 계열별 학과는 다음과 같다.

5. 간호계에 속하는 학과:간호과

<1~4, 6~8호 각각 생략>

제 3 조 (각 학과별 시설·설비의 기준) ① 전문대학의 각 계열별 학과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간호계 시설·설비 별표 5

<1~4, 6~8호 각각 생략>

제 4 조 (기준의 적용) ① 별표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실습인원 20인(제도실은 40인)과 학과당 입학정원 120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학과당 입학정원이 120인을 초과하는 때 120인까지마다 별표의 시설·설비를 배로 한다.

② 공통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할 전문대학은 학과별시설·설비의 별표에서 정하는 공통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별표의 시설·설비중 필수시설·설비는 각학과별로 갖추어야 하며 그 시설·설비를 갖춘 학과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시설·설비를 다른 학과와 겸용 할수 있다.

④ 별표의 시설·설비중 권장시설은 가능한한 확보 하여야 한다.

제 5 조 (간호과의 임상실습 기준) ① 간호과는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지정병원이 있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지정병원은 종합병원이어야 하며 적어도 입학정원의 3분의1 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병상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노후시설·설비의 대체) 시설·설비는 사용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 7 조 (실태보고) 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자는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보유 현황을 4월 3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법률제 3054호 교육법중 개정법률 부칙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된 경우가 규칙에의한 시설·설비의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표 5>

간호계열 시설·설비 기본간호 실습실(1백 32㎡) (품명·규격·필수·권장順 ○안의 숫자는 권

장 숫자입)

기구장(1) 약장(1) 의류장(1) 성인인형(합성수지제·3·④) 주사목욕실 실
 흡용) 성인침대 및 침요(철제 3단 기아식 10) 소아인형(1) 소아침대 및 침
 요(1) 회전침대(자동회전식·①) 환자용 탁상(⑩) 환침대위상(5·⑩) 환자용
 의자(1) 바퀴의자(1) 늘것(1) 환자수송차(1) 치료용휘장(3절식·5) 공기방
 석(고무제·②) 드레싱상(2중형·1·②) 커즈통(대3·중10·소10) 압설자
 (스텐레스 10) 지혈감자(적 10·흑10) 치료음접자(10) 제대감자(2) 수술용
 가위(3) 봉쇄가위(10) 탈사가위(3) 처침기(10) 집도자루(10) 수술용바늘(각
 침 20·환자침 70·직침 10) 수술용봉합사(2호2·3호2·4호2·5호2·(호2·
 호2)·바늘봉(3) 결자통(대1·중1·소1) 쟁반대(5·중5·소5) 부복(복제5)
 어름주머니(고무10) 목걸줄주머니(레자2) 더운물주머니(10) 유아용목욕탕
 (1)대야소(10) 물통(중5·소5) 농반(대10·소10) 이피가(이절식5·⑧) 정맥
 주사철대(10) 흡인기(탁상용1) 흡(노조절기(1) 청진기(20) 혈압기(수은주10
 ·메타식10성인용변기(대10) 소아용변기(소2) 남자용변기(2) 인공배뇨관(3
 ~8호·20) 유치도뇨관(10) 직장관(5) 관장통(10) 관장축(20) 세척기(5) 스
 포이드세척기(5) 위세척관(5) 밀러아보트관(1) 인공영양관(3) 비관(3) 기관
 배관(3호·4호·7호 각1) 척수액압축정기(초자제1) 성인용체중기(1) 신생아
 용체중기(1) 유아용신장기(1) 성인용신장기(1) 출자(1) 태아심음기(2) 골반
 계측기(1) 전지펜슬추라시(10) 전지(10) 치료용 램프(1) 젓짜는 기계(1) 자
 비소독기(중1백10V 1) 스텝워치(1) 면도기(10) 냉장고200L (1) 물병(10)
 물컵(10) 액량기(1천cc10·5백cc 10·30cc 20) 절적기(10cc 10) 주사기(1
 c20·2cc 40·5cc 60·10cc 60·20cc 20·50cc 10) 체온기(구강40·항문
 0) 온도계(봉상2) 관장용 주사기50cc 5·30cc 5) 우유병(5) 모래주머니(대
 3) 침요카바(20) 베키(30) 베키넛(60) 훗이불(50) 반훗이불(20) 침상보(20)
 담요(20) 아기담요(3) 목욕담요(20) 목욕수건(50) 목욕수건(월드 100) 수건
 (30) 고무포(10) 고무얇치마(10) 성인용환의(30) 소아용환의(4) 신생아의복
 (5) 산모용환의(2) 격리카운 빛 모자(20)·(20·⑩) 마스크(50) 고무장갑
 (50) 소독타월(30) 붕대(각종 100) 대방포(10) 중반포(10) 소랑포(10) 분단
 대(①) 조산아보육기(1) 산소(①) 벤트(①) 고압중기소독(25L) 100V(①)
 위액흡인기(①) 소아용중발기(①) 공기침요(①) 육창방지침요(①) 안저검사
 기(①) 분단감자(①) 처치용감자(대 ①) 수술기구상(마식) 바드레 (1) 차트
 꺾이 및차트(1) 처치장(1) 카스렌저 또는 콘로(2) 투약카드진 열상자(1) 운
 반상(2) 세탁물통(이동식 1) 합마(10①)접안경 또는 이경(5 ⑩) 색맹표 시
 력표(1) 소용기(30) 의자변기(1) 깔날(각종8) 바늘(19G·18G·20G 각20
 G·120·22G·60, 26G·40) 항문용낭(5) 탈장대(5)약천칭(1·①)

기초과학실습실(99m²)

실험대(5) 현미경(1천배·8) 냉장고(200L) 비물장(2) 알콜램프(10배·)
 0소) 시험관(10ml·220) 받침유리(400) 받침유리통(8) 염색관(8) 용기(30)
 액체용적측정기(50ml 8) 기압계(②) 정밀천칭(화학천칭·①) 약천칭(4) 스
 톱워치(5) 인체관격모형(블레이제폴진신골격 1·②) 두개골모형(블레이제폴)
 ⑤) 소화기모형(“4 ⑤) 폐모형(“ 2 ⑤) 신장“(“ 2 ⑤) 신장“(“ 2 ⑤)
 순환기계“(“ 2 ⑤) 생식기계“(“ 2 ⑤) 태아“(“ 1) 산도 플라스틱재(1)

특 집

안이 비인후 (클레이제품(1) 인체해부 (전신모형1) 근육 (" 1) 신경 " "1)치아 (" 1) 원심분리기 (전기용 110V 6본조 · 1 · ②)증발접시(9cm · 8) 혈소계 (8) 혈구계 (4) 미량관전조기 (①) 미량관흡인기 (고무제품 ①) 건조기 (초자 4(축머기 (1) 마이크로툼(①) 고압증기멸균기 (25l 110V · 1) 교반기 (전기식 100V · 1) 시험관대 (8) 삼발이 (철제8) 스포이드(대 50) 유리접시)9 cm · 50) 백금루프(10) 시약병(100ml · 250ml · 500ml · 각 20) 드라이오븐 (전기용0×40×45 · 1) 항온기 (" · 1) 증류수기 (4l/시간 · 1) 수소이온농도 측정기(휴대용 · 1) 열판(전기식 · 1) 서린 (150ml · 100ml · 각10) 비커(100ml · 10 250ml · 400ml · 600ml · 각20 1,000ml · 10) 수조(료자 21cm · 8cm · 2)

<신간 안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간호사

전 산 초 역

(4×6배판 190페이지 값 2,500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